

▶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발생 예방을 위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오니,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1조(목적) 이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거래주문을 제출하는 자(이하 ‘공매도 거래자’)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(이하 ‘시스템’)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제출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가이드라인은 ‘23.1.1. 이후 공매도 잔고가 1회라도 0.01%를 초과 또는 1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과 향후 예정인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

1. 공매도 거래중단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
2. 공매도 잔고 0.01%, 10억원 미만 유지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
3. 증권사 계좌에 차입한 주식을 입고한 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

제3조(시스템 요구사항) ①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 잔고, 차입잔고,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(예: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)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.

③ 순보유잔고, 차입잔고,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(법인단위,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이 조에서 ‘계산 단위’)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.

④ 시스템은 장 시작 전에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(SOD) 수량의 계산을 완료하고, 장 시작 후 매매 주문 및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.

- ⑤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업무 관련 관리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,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.
- ⑥ 시스템은 차입,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여야 하며,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⑦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여야 한다.
- ⑧ 시스템은 대차거래의 상대방, 계약체결 일시, 종목 및 수량 등 차입 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⑨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(예: 수기 대차거래, 유·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)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(예: 상급자 승인절차)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⑩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(NSDS)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